

도농교류지원기구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관·단체명			
	대표자		생년월일	
	소재지		전화번호	

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도농교류사업에 필요한 인력,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2. 정관(법인에만 해당한다) 또는 규약 등 설립 근거 서류 3. 사업계획서 4. 자산 상태 및 운영관리 현황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